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여 생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민간대학에 파견(교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간대학 파견(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행 법령상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는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나 외국의 사관학교와 같은 군 관련 교육기관에만 파견(교육)이 가능하여 사관학교의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 발전 추세에 부합하여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여 생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민간대학에 파견(교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안 제26조제4항 신설)

- 1) 현행 법령상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가
입학을 시행 중이나 가입학을 거부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으므로, 가입학 미참가자의 경우 가입학에 참가한 입학예정
자와의 형평성, 사관생도 생활 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
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
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부대나 외국의”를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 학교의 장은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입학예정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
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u>부대나 외국의 사관학교에</u>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 ----- ----- ----- <u>부대, 국내외 대학이나</u> ----- -----.
제26조(입학시기) ①~③ (생략) <u><신설></u>	제26조(입학시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각 학교의 장은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입학예정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u> <u>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락처	(02) 748 - 6244